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
2024. 12. 5.(목) 10:00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2025년도 저소득주민
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
(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2025년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00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3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설치근거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가. 기금사업의 목표 : 금천구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추진
- 나.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
 - 보증금이 부족한 보린주택 입주 예정자에게 적기에 용자 지원

5. 2025년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

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4년도말 조성액 ㉠	2025년도 조성계획			2025년도말 조성액 ㉡=㉢+㉠	비고
		수입㉢	지출㉣	증 감 ㉤=㉢-㉣		
주 거 안 정 기 금	181,263	112,150	120,000	△7,850	173,413	

○ 자금 운용 계획

-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수입액	증 감
계	293,413	298,000	△ 4,587
공공예금 이자	3,350	6,000	△ 2,650
융자금 회수(이자포함)	108,800	92,000	16,800
예치금 회수	181,263	0	181,263
전입금	0	200,000	△ 200,000

-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 감
계	293,413	298,000	△ 4,587
민간융자금	120,000	100,000	20,000
예치금	173,413	198,000	△ 24,587

6. 검토의견

○ 기금 개요

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4년도에 설치한 기금임.

○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수입내역

공공예금 이자 335만원

융자금 회수 1억 8백8십만원

지출내역

민간융자금 1억 2천만원

- 본 기금은 보린주택 입주융자금 지원 등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되었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친후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.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 5. 30.]

□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
제2조(기금의 설치)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제3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」에 따라 적립된 기금
2.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
3. 구의 일반회계 전입금
4. 기금의 운용수익금
5. 그 밖의 수입금 등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어르신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업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(이하 “보린주택”이라 한다) 입주 예정자의 입주보증금 용자
2.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